

춘천지방법원 2020. 5. 26 선고 2019가단334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4. 7.

판결 선고 2020. 5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. 9. 7. 접수 제13101호로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피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0. 9. 7. 접수 제13101호로

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래부터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였던 원인 무효인 등기라고 판단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금에 대하여 원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거부할 수는 없고, 그 손해금 지급의무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의무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엄상문

별지